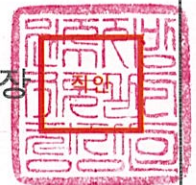


도로구역결정 공고

「도로법」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1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17 년 2 월 14 일

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



1. 도로구역결정 내용

① 구분	② 종류	③ 노선 번호	④ 노선명	⑤ 위치	⑥ 면적 (㎡)	⑦ 기점	⑧ 종점	⑨ 주요 통과지	⑩ 총연장 (km)
도로	일반국도	59	남면-정선	정선군	164,597	문곡리	신월리	남면, 정선읍	7.2
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 도로의 신설 및 확장
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2017.6 ~ 2024.5

4.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:



5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- 열람기간 : 2017. 2. 14. ~ 2017. 2. 28.
- 열람장소 :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

첨부서류

중평면도, 용지도